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3.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14호로 2023년 3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 규정 하한 삭제(안 제5조)

나.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학교 사전 교육이수 규정 삭제(안 제7조~제8조)

다. 연임 시 보수교육 의무 이수규정 삭제(안 제9조)

라. 위원의 의무 중 분과위원회 참여 규정 삭제(안 제11조)

마. 주민자치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규정 정비(안 제18조)

바. 자치계획에 관한 내용 중 분과별 사업계획 규정 삭제 (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2.2.~2.22./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정원)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을 현행의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에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여 각 동별 상황에 따라 최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정원의 하한 규정을 삭제함.
- 안 제7조(위원의 자격) 및 안 제8조(위원의 선정)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전 현행의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이수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위원의 임기 등)에서는위원의 연임 시 교육 이수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당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율 제고 등을 이유로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였으나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참여의지가

있는 주민은 누구나 공평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임.

- 안 제18조(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의 정기회를 현행조례와 같이 월 1회로 하되, 주민자치회 의결로 개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분과위원장 회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동별 상황에 맞춰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함.
- 안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분과별 사업계획” 항목을 삭제함.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있어서 동별 여건을 고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한 조례안임.

다만, 현 조례에서 자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분과별 사업계획은 해당 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 예산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평가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분과별 사업계획은 강제 조항으로 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동별 여건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